

2026년도 제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도 제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10일

용인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직무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직무내용	근무 시간
입법조사관	일반임기제 7급	1명	1년	·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안·검토 지원 · 입법자료 수집·조사·연구·분석 · 조례 사후영향평가 · 법령·제도개선 관련 조사·검토 · 기타 입법·법제사무 처리 및 지원	주 40시간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2 근거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14호)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채용자격 기준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제한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요건

직무분야	자 격 기 준
입법조사관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법제·입법 또는 법무 관련 근무경력

■ **경력 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불가**

- (공무원경력) ○급 또는 ○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 ○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다만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및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제9항)

■ **경력증명서에는 관련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를 통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주 40시간 근무기준**(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시간 비례 계산)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5의3)

■ 모든 경력은 군대 등 의무복무 경력 제외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 시험 : 면접시험 (개별 역량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구술에 의한 문답식으로 검정

※ 입법조사관 분야의 경우 응시자 사전조사서 작성(면접당일 주어지는 질문에 대해 응시자의 경험, 사례, 의견 등을 1장 분량, 20분 이내로 작성)한 후 질의응답 실시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26. 8. 10.(월)	2026. 8. 18.(화) ~ 8. 20.(목)	2026. 8. 26.(수) 전후	2026. 8. 28.(금) 전후	2026. 8. 29.(토) ~ 8. 30.(일) 中	2026. 9. 3.(목) 전후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의회 홈페이지(council.yongin.go.kr) 채용정보란 참조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 실시 예정**
- 인성검사·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6 원서접수

- 접 수 기 간 : 2026. 8. 18.(화) ~ 8. 20.(목) / 3일간
- 접 수 방 법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응시수수료 : 7천원**
 - ※ 단, 인터넷 접수,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환급 가능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용인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운영팀(시의회 1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 용인시청 민원여권과(시청 1층)에서 응시수수료(수입증지)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의회 인사운영팀
-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 현금 및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 ※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30) 유의
 - ※ 우편봉투 겉면에 “2026년 제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 ※ 우편접수 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사실을 반드시 담당자(☎031-6193-3968)에게 전화로 고지하여야 함.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①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수수료(용인시 수입증지) 납부 후 제출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제출 서류(기준 : 응시원서 접수 당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	필수
②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이력서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필수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
⑤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정규직으로 상근 근무한 경우에도 상근(주40시간 근무) 여부 반드시 표기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담당 업무(경력인정범위), 발급 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하거나, <별지 제5호>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관련분야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관련분야임(담당업무)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근로계약서 등 소명자료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시 :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2년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재직 사실을 확인 가능한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⑥ 최종학교 졸업 (학위)증명서 1부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필수
⑦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필수
⑧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⑨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	○ 해당자에 한함	
⑩ 서류전형 제출 서류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해당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필수
⑪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항목 삭제)	필수
⑫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8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자필 서명 필수)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자필 서명 필수)	필수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번역된 한글 번역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양면인쇄 금지

8 근무기간 및 보수

- 근무기간 : 1년(단,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 연 봉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직급별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함

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직급	연 봉 액		근무 시간
		상한액	하한액	
입법조사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0,782천원	50,272천원	주 40시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연금, 건강 ·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서류 등에 허위 기재,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담당자 등의 위조 · 변조를 포함)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경력,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급적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을 권고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해드립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council.yongin.go.kr) 채용정보란에 게시합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으로 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